**■개정이력**

|  |  |  |
| --- | --- | --- |
| **개정번호** | **제/개정일자** | **개정내용** |
| 0 | 2001. 03. 19. | 최초 제정 |
| 1 | 2018. 08. 29. | 전면 개정 |
| 2 | 2021. 05. 01. | 양식 전면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관표준**

|  |
| --- |
| [EE01.001]정관 |
| **목차** |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 및 권한**

 **5. Rule**

 5.1 구성

 5.2 이사회의 종류

 5.3 이사회의 소집

 5.4 부의안건

 5.5 결의방법

5.6 이사회 내 위원회

 5.7 권한의 위임

 5.8 의사록

|  |
| --- |
| **1. 목적** |

**1.1 본 규정은 주식회사 에코프로(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2. 적용범위** |

**2.1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3. 용어정의** |

**3.1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3.2 신주인수권부사채란 회사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  |
| --- |
| **4. 책임 및 권한** |

**4.1 이사회**

4.1.1. 이사회는 "5.4."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보고를 받는다.

4.1.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1)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4.1.2.1)”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1.3.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1.4. 이사회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2 의장**

4.2.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4.2.2.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6조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4.2.3.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4.3 감사**

4.3.1.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3.2.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4 간사**

4.4.1. 이사회에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4.2.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  |
| --- |
| **5. Rule** |

**5.1 구성**

5.1.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5.1.2.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5.1.3. 이사회에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5.2 이사회의 종류**

5.2.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5.2.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생략할 수 있다.

5.2.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5.3 이사회의 소집**

5.3.1. 소집권자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4.2.2.”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3.2. 소집절차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4 부의안건**

5.4.1.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5.4.2. 이사회의 결의사항

1)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1-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3)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1-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위원의 선임․해임

 1-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6) 주주총회의 소집

 1-7)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

 1-8) 영업보고서의 승인

 1-9) 재무제표의 승인

 1-10)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1-11) 특수관계인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1-12)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1-13) 신주의 발행

 1-14)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1-15)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1-16)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7)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의 결정

 1-18)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주식의 병합·분할 및 종류의 변경, 자본의 감소

 1-19) 자기주식의 소각

 1-2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

 1-21) 분기배당의 결정

1-2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결의

1-23)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

2)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1) 정관 변경

 2-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2-4) 이사․감사의 해임

 2-5) 자본금의 감소

 2-6)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2-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8)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

 2-9) 주식의 분할

2-10) 이사, 감사의 선임

 2-11) 이사, 감사 보수 한도의 결정

 2-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

 2-13) 현금·현물·주식배당의 결정

 2-14) 준비금의 감소

 2-15) 상법 및 기타 법령에서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3-1)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3-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3) 공장, 사무소, 사업장 등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3-4) 건 별 금 오억원(￦500,000,000) 이상의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수 양도

 3-5) 건 별 금 일십억원(￦1,000,000,000)을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 기타 채무 부담, 자금의 대여, 신용공여, 대여 및 담보의 제공

3-6) 영업 및 구매 계약을 제외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 해제 해지

3-7) 소가 금 일십억원(￦1,000,000,000)을 이상인 소송(분쟁)의 제기, 소송참가, 취하, 상소포기, 청구포기, 인낙,

조정, 화해 및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종료

 3-8) 소가 금 일십억원(￦1,000,000,000)을 이상의 소송이 접수된 때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종료

 3-9)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5.4.3. 이사회의 보고사항

1)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

2)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

3) “4.1.2.1)”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5.5 결의방법**

5.5.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5.5.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5.5.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5.4. ”5.5.3”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6 이사회 내 위원회**

5.6.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5.6.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7 권한의 위임**

5.7.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5.8 의사록**

5.8.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8.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5.8.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5.8.4.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부칙 (2001. 03. 19)**

1조 실행. 본 규정은 200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8. 29)**

1조 실행. 본 규정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5. 01)**

1조 실행. 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